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뉴스레터

42호 2015년 11월

등록일자 2014.09.24    등록번호 동작 라00076    발행일 2015년 11월 발행(42호)    발행인 신홍균    편집인 노재화    발행처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기획·편집·인쇄 경성문화사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는 매월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본원의 동정을 비롯하여 전문건설 관련 정책·제도의 주요 동향과 최신정보를 제공합니다.

권두사  
연구원소식  
최신건설정보  
발간물안내





## 안녕하십니까?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이 원 익 입니다.

청명한 하늘과 신선한 바람에 완연한 가을인가 싶더니, 어느새 얼음이 얼기 시작한다는 소설(小雪)입니다.

저희 조합은 지난 11일 여러 대의원님을 비롯한 조합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속에 제57회 총회를 성황리에 무사히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주주조합원 여러분의 금융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내년에 보증수수료율과 용자이자율을 20% 인하하는 계획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계획대로 보증수수료율과 용자이자율을 인하하면 조합원 여러분의 금융부담을 연간 270억원 이상 경감시켜드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3법을 비롯한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와 SOC투자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재정집행 등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속에 우리 전문건설업계는 예전의 활력을 조금씩 되찾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계와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저희 조합 또한 모처럼 불어온 건설경기 회복의 훈풍 속에 경영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보증사고로 인한 보증금 청구 증가세가 진정세를 보이고, 전사적인 노력을 통해 구축·정비하여 온 각종 안전장치와 제도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면서 보증사업이 빠르게 안정세를 되찾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운용투자부문도 초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적극적인 투자전략을 펼친 결과 연간 수익목표를 이미 달성하는 등 여타 공제조합들에 비해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은 앞으로도 수익창출 기능 제고와 조합원을 위한 현장경영에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써, 경영성과 개선을 통한 이익을 조합원 여러분께 최대한 환원하고 함께 공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조합원을 위한 조합'으로서 신뢰받은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조합이 전문건설업계를 위한 금융파트너라면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우리 전문건설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현안들에 대해 해안을 모색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등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2006년 설립 이래 10년도 안되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질적·양적 모든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내놓으며 우리업계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건설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함은 물론, 건설산업의 미래가치를 창조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건설업계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신홍균 회장, 연구원 이사장 취임

-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제10대 회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신홍균 회장이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정관에 따라 연구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 신홍균 이사장은 제8, 9대 대한전문건설협회 토공사업협의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직을 맡고 있다.



## 서울시, '하도급개선협의회' 참석

- 우리 연구원의 이종광 연구위원은 지난 11월 5일, 서울시 신청사에서 개최된 “제10차 하도급개선협의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 동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의해 지난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하도급 호민관제도 활성화와 공정성 평가, 원·하도급자간 상생발전을 위한 의견 등이 논의되었다.

## 한국구매조달학회, 2015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 발표

- 지난 11월 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된 한국구매조달학회의 2015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우리 연구원의 박승국 연구위원이 “맞춤형 해외건설 진출방안(물산업 사례)”란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 동 논문에서는 세계 물시장의 성장전망에 따라 해외 물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와 공기업, 민간 기업들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인 ‘한국 물 파트너십’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 한국주거학회, 영문논문 게재

- 우리 연구원의 정준수 책임연구원과 이보라 연구위원이 한국주거학회 논문집(제26권 제5호)에 “장수명주택 해외진출을 위한 대상국가의 외부환경 분석”이란 주제로 영문논문을 게재했다.
  - 동 논문은 우리 연구원에서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해 수행중인 국토진흥원의 “비용절감형 장수명주택 보급모델 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 과제 연구용역(1차년도)의 일부 내용을 담고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패널 참석

- 우리 연구원의 홍성진 선임연구원은 지난 11월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 토론자 패널로 참석해 “ADR제도, 특히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 동 세미나는 불공정 거래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검토를 위해 열린 것으로 법률 지식이 없는 업체들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 한국농어촌공사 기술안전품질원, “수문·폼셈분야 발전방안 토론회” 발표

- 지난 11월 18일, 우리 연구원의 홍성호 연구위원은 한국농어촌공사 기술안전품질원에서 주최한 「생산기반정비사업 등 공사 주요사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수문·폼셈분야 발전방안 토론회」에 참석하여 “공공 발주기관의 합리적인 사업비 산정 및 관리를 위한 제언”에 관하여 주제 발표 하였다.
  - 동 토론회는 해외사업 활성화, 설계·진단분야 민간개방 확대 등 공사 주요사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문·폼셈 기술지원분야의 역할정립 및 경쟁력 확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 전문건설공제조합, “소규모 리모델링 시장의 실태 및 정상화 방안” 설명회 발표

- 지난 11월 19일, 우리 연구원의 박선구 책임연구원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개최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한 소규모 리모델링 시장 정상화 방안」설명회에 참석해 “소규모 리모델링 시장의 실태 및 정상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 동 설명회에는 국회, 서울시를 비롯해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소비자원, 실내건축공사협회 등이 참여하여 향후 소규모 리모델링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모색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전문건설업 모니터링단 회의” 참석

- 우리 연구원의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지난 11월 19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에서 주최한 「전문건설업 모니터링단 회의」에 참석해 “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에 대해 보고하고, 모니터링단 운영과 문항추가, 운영 개선방안 등에 대해 조사 전문가로서 의견을 피력했다.

## 한국주거학회, 2015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 발표

- 지난 11월 21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최된 한국주거학회의 2015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우리 연구원의 김태준 선임연구원과 정준수 책임연구원이 각각 “국내 주택건설업체의 해외진출 역량분석”과 “장수명주택 해외 진출가능성 검토”란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 동 논문들은 우리 연구원에서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해 수행중인 국토진흥원의 “비용절감형 장수명주택 보급모델 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3세부:장수명주택 해외빈출 방안 연구)” 과제 연구용역(2차년도)의 일부로서 각각 ‘국내건설업체의 해외주택시장에서의 현황과 지위 확인’과 ‘진출가능국가의 선정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기적 신고제 폐지' 등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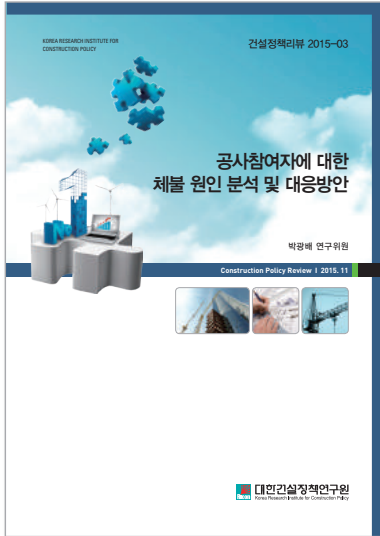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1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기적 신고제 폐지'와 '공공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확인 의무제 및 변경 공사에 대한 계약 추정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개정안에는 △건설업자가 3년마다 등록기준에 대한 사항을 신고하는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직접시공 계획서 제출의무 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여부 확인 의무화 △공제조합을 기존 공제조합에서 분리 설립할 때에는 필요한 창업비용 용자 및 출자금 이체 등의 규정 신설 △포괄 대금지급보증제도 폐지 △폐업 또는 사업자 등록 말소 사실 확인을 위해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 또,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및 관계 전문기술자의 법 위반이나 중대 과실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건축물 기초 및 주요 구조부가 손상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2년간 업무 정지(영업정지)'토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1년간 업무정지'로 수정, 통과됐으며, 건축법 위반행위 최초 적발 시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업무정지 2년의 처벌 조항은 원안대로 처리되었다.

## 전문건설공제조합, 내년 보증수수료율·용자이자율 20% 인하

-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의 금융부담 완화 및 고통분담을 위해 내년도 보증수수료율과 용자이자율을 20% 인하한다고 밝혔다.
  - 조합은 이번 인하조치를 통해 전문건설업계의 금융비용 부담을 보증수수료 190억원, 용자이자 80억원, 총 270억원 가량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확한 인하 폭과 인하방식은 전체적인 경영수지 상황과 보증사고율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 보증수수료 및 용자이자 인하로 인해 수익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조합은 비용예산도 200억원 이상 건축편성했다. 조합원 고통분담 차원에서 소모성 경비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건설사들의 부실로 인한 보증사고 증가세가 진정세를 보임에 따라 보증사고에 대비한 총당금 설정비용도 줄였다.
  - 다만,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강화, 부실채권 관리 및 회수, 신사업 개발 추진을 위한 예산 등은 보강됐으며, 조합 이원익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설경기 회복과 조합의 위기극복 노력 속에 조합의 경영성고가 개선되고 있다”고 밝히며, “철저한 관리를 통해 경영목표를 초과달성하여 그에 따른 이익을 주주조합원에게 최대한 환원하고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공사참여자에 대한 체불 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



- 건설업은 수직적인 도급방식에 의해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건설업에서 생산되는 시설물은 다양한 분야가 종합되어야만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하나의 건설업자가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보유할 수 없음
  - 하도급이라는 수직적인 분업방식을 활용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있음
  - 원도급자부터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등의 생산활동 구조는 계약이행 및 근로의 대가인 대금 이동경로도 수직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 상위단계 건설업자로부터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하위단계 건설업자는 물론자재·장비업자와 건설근로자에게도 체불이 발생하게 됨
  - 건설업 생산방식으로서 수직적인 도급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문제점도 있음
  - 상위단계 건설업자의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파급이 하위단계 건설업자 및 건설근로자까지 미치게 됨
-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체불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대방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강화 등 사전적인 예방대책과 사후적인 체불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함
  - 소액 하도급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자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업체이며, 이들 업체에게 체불은 업체의 파산을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불 대응수단도 미흡함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더욱 확대하여 1천만원 미만 하도급공사까지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 〈 주요내용 〉

- 원도급자의 체불은 건설현장에서 연쇄적으로 체불이 발생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서울시를 비롯하여 공공발주자는 체불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런 조치는 지속되고 강화될 것으로 판단됨
- 임금체불의 대책으로 '소액체당금 제도'가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하도급자에 의해 발생하는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체불과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대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면제 업체 중 부도업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확대는 실질적인 체불대책이 될 수 있을 것임